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250
----------	------

제안년월일 : 2021년 3월 3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권영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2021. 3. 3.)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동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3조를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안 제3조제2항).
- 다.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계획에 반영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축산물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생 략)</p> <p>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u>농·수·축산물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p> <p>③ (생 략)</p> <p><u><신 설></u></p> <p><u>제9조 ~ 제10조</u>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유전자변형식품등” 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u></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u>-----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u> <u>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u></p> <p><u>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u></p> <p><u>제10조 ~ 제11조</u>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p>